

Covid-19 기간 동안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및 실업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뉴스

제09/2021/NQ-HDND호 결의
제68/NQ-CP호 결의 및
제23/2021/QD-TTg호 결정

2021년 8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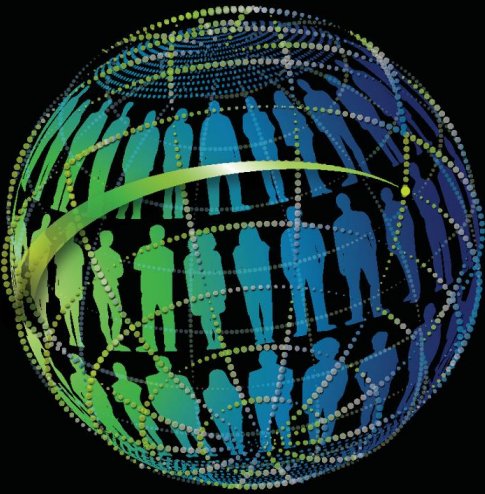
배경

호치민 사회보험청은 TS24 주식회사 및 CSED(기업 개발 및 지원 센터)와 함께 정부의 Covid-19와 관련한 많은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온라인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제09/2021/NQ-HDND호 결의, 국무총리의 제68/NQ-CP호 결의 제23/2021/QD-TTg호 결정에 따라 본 뉴스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1.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 납입율 감소
2.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납입 일시 중단
3. 근로자의 직무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근로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회성 지원
5.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 된 경우 일회성 지원
6. 기타 사항





주목할 만한 내용 :

01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 납입 감소

- 사회보험당국은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 납입액 감소 추정치를 고용주들에게 통보했다. 기업은 이 납입액 감소분을 자체적으로 Covid-19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여전히 정부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산업 재해 및 질병 기금 납입 감소액을 Covid-19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아직 해당 기금의 사용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 기금을 사용하여 Covid-19 Test kit 및 기타 Covid-19 예방 물품을 구매한 경우, 기업은 향후 세금 신고 및 감사 목적으로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 기금을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지급받은 인원의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02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납입 일시 중단

- 정부의 2020년04월09일 제42/NQ-CP호 결의 및 2020년 10월 19일 제154/NQ-CP호 결의와 같이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납입을 계속적으로 중단한다.(2021년 4월 대비 15% 이상 감소)
- 제23/2021/QD-TTg호 결정문은 퇴직연금 및 유족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납입 감소율 산정 및 추후 납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납입 일시 중단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며 제42/NQ-CP호 결의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다.
- 고용주는 본 결정에 따라 해당 사회 보험 기관에 신청서 양식 01을 제출하고 노동부 -보훈사회부에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5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한다.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03 근로자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고용주는 실업 보험 기금(재정 지원을 신청한 시점에 12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으로부터 근로자의 직업 훈련, 교육, 기술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대 지원 금액은 **VND1,500,000/인/월**이며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 고용주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노동-보훈사회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4 근로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회성 지원

- 유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Covid-19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일회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
 - 연속 15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업무 중단 또는 무급휴가: **VND 1,855,000/인**
 - 1개월 이상의 업무중단 또는 무급휴가: **VND 3,710,000/인**



Covid-19 기간 동안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및 실업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뉴스

제09/2021/NQ-HDND호 결의
제68/NQ-CP호 결의 및
제23/2021/QD-TTg호 결정

2021년 8월 11일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05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된 경우 일회성 지원

2021년 6월에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은 제09/2021/NQ-HDND호 결의를 공표하였다. 제09/2021/NQ-HDND호 결의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제68호 결의 및 제23호 결정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사회보험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업무를 중단한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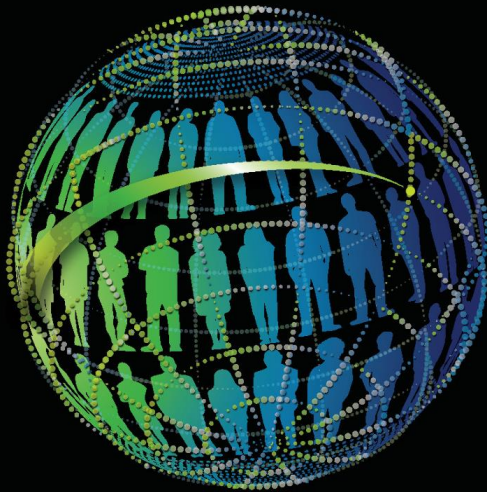
-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법 제 99조 ,3항에 따라 업무를 중단하게 되고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격리 또는 봉쇄 지역에 있게 되는 경우 **VND 1,000,000/인**의 일회성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는 해당 금액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최초 14일의 업무 중단 기간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기간의 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주는 본사가 위치한 인민위원회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

- 근로자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ovid-19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VND 3,710,000/인**의 일회성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이 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서비스 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VND 1,000,000/인** 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 중단/무급 휴가/근로계약 해지 시 **6세 미만 자녀1인당 VND 1,000,000**를 추가로 지원된다.

고용주의 무급휴가, 생산 회복을 위한 임금 지불을 위한 대출

-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의 경우 지역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개월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 고용주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정책은행에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otable points (cont.)

06 기타 사항

- 기업이 7월에 산업재해 및 질병보험에 0.5%를 납입한 경우 초과 납입된 금액은 사회보험당국에 통보할 필요 없이 이후 보험료 납입액과 상계된다.
- SARS-CoV-2에 감염후 퇴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양식 C65 대신 면역 증명서와 격리 결정서를 근거로 질병보험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 호치민시 고용 서비스 센터는 다양한 지원 방식(우편을 통한 실업 보험서류 발송, hot line 또는 Zalo 등)을 통해 현재 격리 봉쇄된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즉시 실업보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기간동안 국무총리의 제16호 지시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주는 사업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직원을 위한 건강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